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8. 20 선고 2024나1907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8. 20 선고 2024나19071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3. 27 선고 2023가단5171334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대한민국

피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수

변론종결 2024. 7. 2.

판결선고 2024. 8. 20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3. 27. 선고 2023가단5171334 판결

주문

-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7. 1. 체결된 매매계약을 106,160,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06,160,000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사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, 이에 대한 제1심 법원의 판시는 그대로 타당하다. 따라서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도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 론

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동현, 판사 이상아, 판사 송영환

별지